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0-169호

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, 주차장) 입체적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19-168호(2019.10.08.)로 중복 및 입체적 결정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주차장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“http://lulis.molit.go.kr”에서 열람가능)는 금정구 건설과(☎519-4722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1월 25일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, 주차장) 입체적 변경결정 조서

○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주차장) 중복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3	공공청사	금사동 388-4 번지 일원	2,555	-	2,555	금정구 고시 제1995-42호 (1995.9.22)	▸ 지하2층 ~ 지상7층 행복주택 (비도시계획시설)
기정	-	주차장	금사동 388-4 번지 일원	2,555	-	2,555	금정구 고시 제2019-168호 (2019.10.8.)	

○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변경	-	공공청사	금사동 388-4 번지 일원	층	지하1층, 지상 1,2층	지하 1,2층, 지상 1,2층	지하 1,2층, 지상 1,2층	금정구 고시 제2019-168호 (2019.10.8.)	▸ 행복주택 지상3~6층 → 지하2층~지상7층 (비도시계획시설)
변경	-	주차장	금사동 388-4 번지 일원	층	지하 2층	지하 1층	지하 1층	금정구 고시 제2019-168호 (2019.10.8.)	

주) 공공청사 범위는 공공업무시설에 한하며 주차장의 범위는 공영주차장에 한함.

○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공공 청사	•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(공공청사, 주차장 A=2,555㎡) ▸공공청사 지하1층,지상1,2층→지하1,2층,지상1,2층 ▸주차장 지하2층 → 지하1층	• 기 결정된 공공청사 및 주차장의 위치와 높이의 변경을 통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편의성 증진 및 비도시계획시설인 행복주택 입주민들의 효율적 내부 동선체계 확보를 도모하고, 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위해 공간적 범위를 변경결정코자 함.
-	주차장		

○ 공공청사 건폐율, 용적률 높이의 범위

건폐율		용적률		높이	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60% 이하	-	200% 이하	-	6층이하	7층이하	

2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